

(검토보고서-참조4)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 안 변 호	1144
------------	------

2002. 4. 10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(2001. 11. 10)의 개정
따라 집행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가 일부 조정됨으로써
-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
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본 조례 제3조 제3항 제3호중 “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,성남시분당
문화정보센터”를 “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”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임.

3. 검토의견

-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임
위원회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회 직무의 공백이 생기지
않도록 함과 동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
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	1145
------------	------

2002. 4. 10

1. 제안사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(2001. 11. 10)의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가 일부 조정됨으로써
-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동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중 “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,성남시분당문화정보센터”를 “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”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임.

3. 검토의견

- 성남시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조치하고 사료됩니다.